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
(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

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346호

나. 제출자 : 엄셋별 의원, 도병두 의원, 윤영희 의원, 이인식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
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2. 제안이유

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,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.59명에 그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상황에서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또한 전체에서 20%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어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. 이에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협조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6조)

- 라.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정책 수립 및 조례 제·개정 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바.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함(안 제9조에서 제12조)
- 사.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- 아.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

4. 관계법령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, 제5조, 제7조 등

5. 검토의견

-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(‘20~’70년)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,184만명에서 2070년 3,766만명으로 감소한다는 절망적인 예측치가 나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음.
- 사실 인구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, 범국가적인 정책역량과 국민의 인식개선이 뒤따라야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것임.
-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- 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 시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후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,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-고령화를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22. 6. 15.] [법률 제18580호, 2021. 12. 14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민의 책무)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인구정책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

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 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.

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14.>

⑤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